

# 서울특별시 노동자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488
----------	--------

제안년월일 : 2023년 3월 3일  
제안자 : 기획경제위원장

## 1. 수정이유

- 사용료와 이용료에 대한 세부 산정기준이 미흡하여 이를 보다 명확히 하고, 이용료 감면사유로 부적합한 기준을 삭제하며, 조례의 시행 시기와 사용료와 이용료의 부과·징수에 대한 경과조치를 명시함.

## 2. 수정의 주요 내용

- 시설별 사용료는 「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」에 따르도록 하고, 이용료 범위를 규정한 별표를 추가함(안 제8조 및 별표2).
- 이용료 감면 요건에서 “그 밖에 노동자의 복지증진 및 권익보호를 위한 사용”을 삭제함(안 제9조).
- 조례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고, 사용료와 이용료의 부과·징수에 대한 경과조치를 명시함(안 부칙 제1조 및 제2조).

# 서울특별시 노동자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노동자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8조 중 “복지시설” 을 “노동자복지시설” 로 하고, “있으며, 제5조제2항에 따른 사용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」 를 준용한다.” 를 “있다. 이 경우 사용료는 「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」 에 따라 산정하고, 이용료는 별표2의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한다.” 로 하며, 별표2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[별표 2] 시설 이용료(제8조 관련)

명 칭	시설명	기본 이용시간	금액(원)	비고
서울특별시 노동자복지관	강당	2시간	80,000 ~ 150,000	- 냉난방 이용 금액 포함 - 음향 기본 장비 필요 시 제공 - 1회의 기본 이용시간은 2시간으로 하며, 2시간 미만 이용은 기본 이용시간 이용 으로 간주함 - 기본 이용시간 초과 시 이용금액을 시간당 단가로 추가 징수함
	소강당	2시간	60,000 ~ 120,000	
서울특별시 강북노동자복지관	강당	2시간	80,000 ~ 150,000	
	회의실	2시간	40,000 ~ 80,000	

안 제9조의 제목 “(감면규정)을 “(이용료 감면 등)” 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제3호를 삭제한다.

안 부칙 제1조 및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사용료 및 이용료에 대한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체결된 사용계약 또는 이용계약에 대해서는 해당계약이 종료되는 시점부터 제8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. 다만 서울특별시 노동자복지관 및 서울특별시 강북노동자복지관에 대해서는 새로운 위수탁협약이 체결되는 시점부터 적용한다.

## 수정안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																						
<p>제8조(사용료의 부과·징수) 복지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별표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 등을 부과·징수할 수 있다.</p> <p>&lt;신 설&gt;</p> <p>[별표2] 전태일 노동복합시설 사용료(제8조 관련)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 margin-top: 10px;"> <thead> <tr> <th style="width: 25%;">시설명</th> <th style="width: 25%;">㎡당 사용료(원)</th> <th style="width: 25%;">사용기간</th> <th style="width: 25%;">비고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노동허브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5,000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개월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보증금 별도 관리비 별도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시설명	㎡당 사용료(원)	사용기간	비고	노동허브	5,000	1개월	보증금 별도 관리비 별도	<p>제8조(사용료 등) 시장은 복지시설을 사용하려는 자에게 사용료 및 이용료를 부과·징수할 수 있으며, 제5조제2항에 따른 사용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」를 준용한다.</p> <p>제9조(감면규정)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를 위한 사용</li> <li>2.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및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의 사용</li> <li>3. 그 밖에 노동자의 복지증진 및 권익보호를 위한 사용</li> </ol> <p>② (생략)</p> <p>&lt;삭 제&gt;</p>	<p>제8조(사용료 등) -----노동자복지시설----- ----- 있다. 이 경우 사용료는 「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」에 따라 산정하고, 이용료는 별표2의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한다.</p> <p>제9조(이용료 감면 등) ① ----- ----- -----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----- -----</li> <li>2. ----- -----</li> </ol> <p>&lt;삭 제&gt;</p> <p>②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[별표2] 시설 이용료(제8조 관련)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 margin-top: 10px;"> <thead> <tr> <th style="width: 10%;">명 칭</th> <th style="width: 10%;">시설 명</th> <th style="width: 10%;">기본 이용 시간</th> <th style="width: 15%;">금액(원)</th> <th style="width: 55%;">비고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rowspan="2"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서울특별시 노동자복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강당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2시간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80,000 ~ 150,000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- 냉난방 이용 금액 포함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소강당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2시간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60,000 ~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- 음향기본 장비 필요시 제공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명 칭	시설 명	기본 이용 시간	금액(원)	비고	서울특별시 노동자복	강당	2시간	80,000 ~ 150,000	- 냉난방 이용 금액 포함	소강당	2시간	60,000 ~	- 음향기본 장비 필요시 제공
시설명	㎡당 사용료(원)	사용기간	비고																					
노동허브	5,000	1개월	보증금 별도 관리비 별도																					
명 칭	시설 명	기본 이용 시간	금액(원)	비고																				
서울특별시 노동자복	강당	2시간	80,000 ~ 150,000	- 냉난방 이용 금액 포함																				
	소강당	2시간	60,000 ~	- 음향기본 장비 필요시 제공																				

변 행	개 정 안	수 정 안																		
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칙</p> <p><u>이 조례는 2023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.</u></p>	<table border="1" data-bbox="1417 304 1973 798"> <tr> <td data-bbox="1417 304 1516 344">지관</td> <td data-bbox="1516 304 1610 344"></td> <td data-bbox="1610 304 1704 344"></td> <td data-bbox="1704 304 1798 344">120,000</td> <td data-bbox="1798 304 1973 344" rowspan="2">- 1회의 기본 이 용시간은 2시간 으로 하며 2시 간 미만 이용 은 기본 이용 시간 이용으로 간주함</td> </tr> <tr> <td data-bbox="1417 344 1516 467">서울 특별 시 강북 노동 자복 지관</td> <td data-bbox="1516 344 1610 467">강당</td> <td data-bbox="1610 344 1704 467">2시간</td> <td data-bbox="1704 344 1798 467">80,000 ~ 150,000</td> </tr> <tr> <td data-bbox="1417 467 1516 798"></td> <td data-bbox="1516 467 1610 798">회의 실</td> <td data-bbox="1610 467 1704 798">2시간</td> <td data-bbox="1704 467 1798 798">40,000 ~ 80,000</td> <td data-bbox="1798 467 1973 798">- 기본이용시간초 과시이용금액을 시간당 단위로 추가장함</td> </tr> </table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칙</p> <p><u>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</u>  <u>제2조(사용료 및 이용료에 대한 경과조치) 이 조례</u>  <u>시행 이전에 체결된 사용계약 또는 이용계약에</u>  <u>대해서는 해당계약이 종료되는 시점부터 제8조의</u>  <u>개정규정을 적용한다. 다만, 서울특별시 노동자</u>  <u>복지관 및 서울특별시 강북노동자복지관에</u>  <u>대해서는 새로운 위수탁협약이 체결되는 시점</u>  <u>부터 적용한다.</u></p>					지관			120,000	- 1회의 기본 이 용시간은 2시간 으로 하며 2시 간 미만 이용 은 기본 이용 시간 이용으로 간주함	서울 특별 시 강북 노동 자복 지관	강당	2시간	80,000 ~ 150,000		회의 실	2시간	40,000 ~ 80,000	- 기본이용시간초 과시이용금액을 시간당 단위로 추가장함
지관			120,000	- 1회의 기본 이 용시간은 2시간 으로 하며 2시 간 미만 이용 은 기본 이용 시간 이용으로 간주함																
서울 특별 시 강북 노동 자복 지관	강당	2시간	80,000 ~ 150,000																	
	회의 실	2시간	40,000 ~ 80,000	- 기본이용시간초 과시이용금액을 시간당 단위로 추가장함																

## 서울특별시 노동자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노동자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② 시장은 노동자복지관의 시설 건립취지 및 기본적 기능을 훼손하지 않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노동자복지관 사무실 사용에 대한 세부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.

제6조제1항 중 “제5조에 따른”을 “제5조제1항에 따른”으로 한다.

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8조(사용료 등) 시장은 노동자복지시설을 사용하려는 자에게 사용료 및 이용료를 부과·징수할 수 있다. 이 경우 사용료는 「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」에 따라 산정하고, 이용료는 별표2의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한다.

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9조(이용료 감면 등)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

우에는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.

1.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를 위한 사용
2.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및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의 사용

② 이용료는 선납하여야 하며 선납한 이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.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.

1.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한 경우
2.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허가 신청을 취소한 경우
3. 서울특별시의 행사 또는 노동자복지시설의 사정으로 사용이 어렵게 된 경우
4. 그 밖에 반환 요구가 정당하다고 인정될 경우

별표2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[별표 2] 시설 이용료(제8조 관련)

명 칭	시설명	기본 이용시간	금액(원)	비고
서울특별시 노동자복지관	강당	2시간	80,000 ~ 150,000	- 냉난방 이용 금액 포함 - 음향 기본 장비 필요 시 제공 - 1회의 기본 이용시간은 2시간으로 하며, 2시간 미만 이용은 기본 이용시간 이용 으로 간주함 - 기본 이용시간 초과 시 이용금액을 시간당 단가로 추가 징수함
	소강당	2시간	60,000 ~ 120,000	
서울특별시 강북노동자복지관	강당	2시간	80,000 ~ 150,000	
	회의실	2시간	40,000 ~ 80,000	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사용료 및 이용료에 대한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체결된 사용계약 또는 이용계약에 대해서는 해당계약이 종료되는 시점부터 제8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. 다만 서울특별시 노동자복지관 및 서울특별시 강북노동자복지관에 대해서는 새로운 위수탁협약이 체결되는 시점부터 적용한다.

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5조(복지시설의 이용) 서울특별시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은 복지시설의 손해발생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용자에 대하여 퇴소명령 등 필요한 이용제한의 조치를 할 수 있다.</p> <p>1. ~ 6. (생략)</p> <p>&lt;신 설&gt;</p>	<p>제5조(복지시설의 이용) ①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1. ~ 6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시장은 노동자복지관의 시설 건립취지 및 기본적 기능을 훼손하지 않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노동자복지관 사무실 사용에 대한 세부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.</p>
<p>제6조(관리·운영의 위탁) ① 시장은 복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적정한 능력을 갖춘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제3조에 따른 복지시설의 관리·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. 이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시장의 사무 중 제5조에 따른 복지시설 이용제한의 조치에 관한 사무는 이를 수탁 기관의 장에게 위탁된 것으로 본다.</p> <p>② (생략)</p>	<p>제6조(관리·운영의 위탁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제5조제1항----- ----- -----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8조(사용료의 부과·징수) 복지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별표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 등을 부과·징수할 수 있다.</p>	<p>제8조(사용료 등) 시장은 노동자복지시설을 사용하려는 자에게 사용료 및 이용료를 부과·징수할 수 있다. 이 경우 사용료는 「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」에 따라 산정하고, 이용료는 별표2의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한다.</p>
<p>&lt;신 설&gt;</p>	<p>제9조(이용료 감면 등)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.</p> <p>1.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를 위한 사용</p> <p>2.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및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의 사용</p> <p>② 이용료는 선납하여야 하며 선납한 이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.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.</p> <p>1.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한 경우</p> <p>2.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허가 신청을 취소한 경우</p> <p>3. 서울특별시의 행사 또는 노동자복지시설의 사정으로 사용이 어렵게 된 경우</p> <p>4. 그 밖에 반환 요구가 정당하다고 인정될 경우</p>

[별표2] 전태일 노동복합시설 사용료(제8조 관련)

시설명	㎡당 사용료(원)	사용기간	비고
노동허브	5,000	1개월	보증금 별도 관리비 별도

[별표2] 시설 이용료(제8조 관련)

명칭	시설명	기본 이용시간	금액(원)	비고
서울특별시 노동자 복지관	강당	2시간	80,000 ~ 150,000	- 냉난방 이용 금액 포함
	소강당	2시간	60,000 ~ 120,000	- 음향 기본 장비 필요시 제공 - 회의 기본 이용
서울특별시 강북노동자 복지관	강당	2시간	80,000 ~ 150,000	시간은 2시간으로 하며, 2시간 미만 이용은 기본 이용시간 이용으로 간주함
	회의실	2시간	40,000 ~ 80,000	- 기본이용시간 초과 시 이용금액을 시당 단위로 추가 장수함